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신설 등〉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878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입법배경 및 논의 연혁	3
가. 개정안의 취지	3
나. 인격권의 의의 및 「민법」상 규정 필요성	3
다. 인격표지영리권의 의의 및 「민법」상 규정 필요성	7
라.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관련 「민법」 개정 논의 연혁 ...	12
마. 해외 입법례	1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15
가. 인격권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15
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안 제751조의2 신설)	21
다.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안 제3조의3 신설)	24
라. 부칙	28
※ [참고자료]	2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1명
2. 제 안 일 : 2025. 11. 4.
3. 회 부 일 : 2025. 11.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기본적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민법 총칙에 인격권을 명문화하고자 함. 동시에 인격권은 그 성질상 침해된 후의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과 같은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도록 하였음.

나아가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격 표시영리권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자 함. 판례는 1990년대부터 사람의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음. 그러나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하급심 판례가 인격표지영리권의 인정 여부, 법적 성격 등에 대해 엇갈리는 등 문제가 있음. 또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의 발달로 인해 유명인이 아니라더라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민법에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권리를 창설하고 성명, 초상 등의 인격표지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입법배경 및 논의 연혁

가. 개정안의 취지

개정안은 현행 「민법」 제1편 총칙에 인격권을 명문화하여 규정하면서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청구,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 청구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안을 규정하는 한편,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적 권리로서 사람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의 근거를 함께 신설하려는 것임.

나. 인격권의 의의 및 「민법」상 규정 필요성

인격권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신체·건강·명예·정조·성명·초상·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¹⁾(개별적 인격권)이자, 사적 생활 형성을 위한 자율적 영역인 사생활영역의 보호를 비롯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기본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함.²⁾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452면

2) 안문희 등 2인, 법무부 연구보고서 「민법상 인격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2021
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과 개별적 인격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개별적 인격권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초상·성명·음성·대화 등과 같이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권리를 말하고, 일반적 인격권은 이들 개별적 인격권의 총체를 뜻하는 것으로서 인격권이라는 용

헌법은 일반적 인격권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로부터 일반적 인격권이 도출된다고 하여 일반적 인격권의 개념을 인정³⁾하고, 학설 역시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⁴⁾ 또는 헌법 제10조와 제37조제1항⁵⁾과의 상호관계에서 도출되는 권리로 해석⁶⁾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민법」에 인격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판례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⁷⁾하는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제751조에 따른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⁸⁾은 물론, 제764조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어는 이와 같은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됨.

3)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을 보장 중궁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4)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5)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생략)

6)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19판, 박영사, 2023, 370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 기본권 질서 가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1항이 밝힌 것처럼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대 경시될 수 없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면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신장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일반적 의미의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 상호 간의 상승작용에 의해 나오는 기본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7)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8)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883 판결

원심 인용의 제1심 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그 판시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 법인이 원고를 징계 파면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소정의 징계방법의 종류와 양정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

명예회복 청구권⁹⁾을 인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사후적 구제방안 외에도 「민법」 제214조¹⁰⁾를 유추적용하여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금지 청구권)에 기초한 침해행위의 제거와 중지를 청구¹¹⁾할 수 있다고 인정함.

한편, 개별법에서는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인격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면서,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언론 등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여¹²⁾ 그 경계를 규정하고 있음.

되는 그 선택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어, 이는 이른바 징계권 남용으로서 불법행위가 되고, 또 출근한 원고에게 근무를 못하게 하면서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별적 대우를 한 소위는 원고의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원심은 피고는 위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따라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중략)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회복함이 곤란한 점, 부정적 광고에 대하여 효율적인 구제수단인 사죄광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 회사의 규모와 재산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손해액을 금 30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바,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민법 제764조 참조),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산정한 손해액도 적정하다고 보여진다.

10)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1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인격권은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나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침해행위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비법인사단의 권리 구제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침해행위 금지로 보호되는 비법인사단의 이익과 그로 인한 타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비법인사단의 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비법인사단은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한 타인을 상대로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1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이처럼 인격권은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판례를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고, 이러한 판례가 축적되면서 판례의 법리를 반영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이 개별법상 인격권을 정의하거나 인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인격권에 대하여, 헌법적 의미에서의 인격권과 민사적 의미에서의 인격권은 그 범위에 차이¹³⁾가 있을 수밖에 없고, 기존 「민법」의 보호범주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인격권 침해가 증가¹⁴⁾한다는 점을 들어 「민법」에 인격권의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고, 이에 따라 여러 차례의 「민법」 개정논의가 진행되었음.¹⁵⁾¹⁶⁾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민법」에 일반적인 인격권 및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의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3) 강훈주, 「민법상 인격권 신설에 대한 검토」, 2024, vol.40, no.4, pp.187-188

헌법적 의미에서 ‘일반적 인격권’과 민사적 의미에서 ‘일반적 인격권’은 헌법 제10조 등에서 도출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인격권의 범위에 있어서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헌법상 ‘기본권’은 예외적으로 대사인효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국가적 방어권이기 때문에, 헌법상 인격권의 내용과 사인간에 적용되는 민사적 권리로서 인격권은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14) 권오상, 「민법상 인격권 조항 도입과 확장성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025, vol.32, no.1, p. 51

15) 2022년 정부는 「민법」상 인격권 규정 신설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면서, 추진배경으로 불법녹음·촬영, 직장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들었음.

16) 개정논의의 연혁은 4)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관련 논의 연혁에서 함께 설명함.

다. 인격표지영리권의 의의 및 「민법」상 규정 필요성

“인격표지영리권”은 사람이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하며, 통상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으로 통칭되는 개념임.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 유래된 용어로,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선수의 초상권 사용과 관련한 *Haelan Laboratories, Inc. v. Topps Chewing Gum, Inc* 사건을 통해 인정되기 시작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보아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인정하고 있음.¹⁷⁾

현행 「민법」 및 개별법에 퍼블리시티권을 정의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퍼블리시티권”은 통상 “유명인”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서 법원은 1995년 소위 “이회소 사건”에서 최초로 퍼블리시티권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권리”로 정의하고 인정여부를 판단하였음.¹⁸⁾

17) 최승재,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과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2010 언론중재, pp.69~70.

18)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가합9230 판결 [출판등금지가처분] [하집1995-1, 323]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1이 위 신청외 1과 신청인들의 성명, 초상, 이력, 경력, 생활상, 성격상 등이 지닌 재산적 가치를 이용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권리(right of commercial appropriation)라고 할 수 있는데, 문학작품인 위 소설에서 위 신청외 1의 성명, 사진 등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후 하급심 판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성문법상 권리가 아니며
인격과 분리된 독립적인 재산적 권리라고 보기 어려움을 근거로 퍼블
리시티권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¹⁹⁾²⁰⁾와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적
권리로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혼재되고 있음.²¹⁾²²⁾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에서도 해당 권리개념을 인정
할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민법」 제185조에 따른 물권 법정주의 등을
고려하여 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
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음.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
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
으므로,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
데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따라서 법률, 조
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
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

2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7. 8. 29. 선고 94가합13831 판결

퍼블리시티권이 상속가능한 권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퍼블리시티권이 아직까지 성문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지 않고 있고, 그 향유주체(저명인에게만 인정될 것인가, 저명인이 아닌 일반
인 모두에게도 인정될 것인가,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 양도가
능여부 등에 관하여 아직까지 학설의 대립이 있을 뿐 이에 관한 일치된 견해가 없는 점, 퍼블
리시티권이 그 당사자의 인격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권리 또는 무체재산권과 유사한 권리
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재산권이라고 하여 반드시 상속이 가능한 것은 아닌 점(예컨대, 연금청
구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인격권은 상속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퍼블리시
티권도 상속될 수 없는 권리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10. 선고 2004가합16025

원고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때문에, 피고 회사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유명한 연예인으로서
그 초상권을 일반인들의 그것과는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으므로 타인의 불법
행위로 그 초상권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중략)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22) 박정균·박인회,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과 입법화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2권
제4호 통권 62호(2018. 6.)

2012년 10월 9일부터 2014년 7월 10일까지 선고된 판결 중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가 문
제된 사건은 총 33건이다. 33건의 하급심 판결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
정한 판결은 16건이며,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부정한 판결은 17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유명인”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통상의 퍼블리시티권) 성립 여부에 대한 하급심 관례가 엇갈리는 가운데, 2022년 정부는 모든 보편적 개인인 “사람”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의 명문의 근거를 「민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한 바 있음.²³⁾

이는 SNS 플랫폼을 활용한 소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그 인격표지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임. 입법예고안은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았음. 그러나 이러한 “퍼블리시티권” 또는 “인격표지영리권”과 관련하여 법률에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민법」에 명문의 권리로 규정하는 방안²⁴⁾뿐만 아니라, 성명·초상 등을 「저작권법」의 저작물에 준하여 보호하는 방안²⁵⁾,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별도의 법을 제정²⁶⁾하는 방안 등 여러 방향에서 개정 논의가 이루어졌음.

23) 법무부 보도자료,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 12. 26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비디오 플랫폼으로 사람들 사이의 직접소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그렇게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격표지영리권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본법인 「민법」에 유명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고, 상속 여부, 상속 후 존속기간 및 침해 시 구제수단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분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4) 2022년 정부 입법예고안, 동 개정안

25)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대표발의(2107440), 박창식의원대표발의(1900539), 이성현의원대표발의(1804588), 박찬숙의원대표발의(173276)]

26)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길정우의원대표발의, 1913653)

2021년 12월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유명인의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제2조제1호타목)하여,²⁷⁾ 개별법에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²⁸⁾

이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은 행위규제에 관한 법률로 권리의 양도 및 상속가능성, 보호기간 등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여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고,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하는바 퍼블리시티권은 「민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²⁹⁾과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의 일종으로 「민법」에 규정할 경우 인격권의 일신전속적 성격과 사망 후에도 일정기간 권리가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 간 양립이 어려운바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차. (생략)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8)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58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6. 19. 선고 2008노108 판결에서도 가수의 성명이 “공연활동에 사용하는 영업 표지”이므로 성명의 사칭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29)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민사법학 제57호(2011. 12.)

성명이나 초상은 개인이 가지는 인격적 징표에 속한다. 이에 관한 권리를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개인의 초상은 인격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사람인지에 따라 개인의 초상이 인격적 요소만이 있을 수도 있고 재산적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또한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에서 인격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를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격권의 성질을 가진 부분과

권리의 법적 성격이나 내용, 보호체계 등을 그 특성에 부합하게 규정할 수 있음을 근거로 별도의 특별법으로서 단행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음.³⁰⁾

이와 관련하여, 제22대국회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퍼블리시티권의 정의와 보호범위 및 권리구제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박수현의원 대표발의)」³¹⁾이 발의되어 계류중임을 심사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30) 이해완,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 방향에 대한 연구」, 성균관법학, 2016 vol.28, no.4, pp.79

31) 의안번호 제2215847호,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2026. 1. 5. 발의 및 2026. 2. 23. 상정
퍼블리시티권을 "자신의 초상등[초상, 성명(예명·아호·약칭 등 이명을 포함한다), 음성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사람을 특정한다고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정의하고,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퍼블리시티권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한다고 하면서 권리의 침해제거·예방 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등을 규정함.

라.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관련 「민법」 개정 논의 연혁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2004년 인격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폐기되었고, 2013년 인격권 및 침해배제청구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개정안(최원식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또한,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시안(재산법 분야 전면개정)에도 인격권이 포함되어 있었고, 법무부는 2022년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2023년 11월 인격권과 침해배제청구권의 명문의 규정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폐기되었음.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관련 「민법」 개정안 논의 경과]

구분	발의/제출	의안번호	주요내용	처리결과
제17대	정부 2004. 10. 21.	170611	-인격권	임기만료 폐기 (소위 미심사)
제19대	최원식의원 2013. 8. 23.	1906496	-인격권, 침해제거·예방청구권, 사망자의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임기만료 폐기 (소위 미심사)
	정부 2014. 2.	미제출	-인격권	-
제21대	정부 2023. 11. 13.	2125350	-인격권, 침해제거·예방청구권	임기만료 폐기 (소위 논의)
	윤미향의원 2022. 8. 31.	2117124	-인격권, 침해제거·예방청구권 -법인의 인격권	임기만료 폐기 (소위 논의)
	정부 2022. 12.	미제출	-퍼블리시티권 (인격표지영리권)	-
제22대	김현정의원 2024. 9. 24.	2204218	-인격권, 침해제거·예방청구권	상정 (2025. 1. 10.)
	박희승의원 2025. 11. 4.	2213878	-인격권, 침해제거·예방청구권 -퍼블리시티권 (인격표지영리권)	미상정

마. 해외 입법례

인격권의 경우 스위스³²⁾, 오스트리아³³⁾가 민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을 확인³⁴⁾할 수 있는데, 두 사례 모두 인격적 이익을 예시적 ·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음.³⁵⁾ 프랑스의 경우 “인격권”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나, 사생활 · 신체의 존중에 관한 권리, 무죄의 추정을 존중받을 권리 등에 관한 규정³⁶⁾이 있음.

그 외에는 민법상 일반적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독일의 경우 판례에 의해서 일반적 인격권을 인정하고 그 구제 수단으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금지 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³⁷⁾

32)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Art. 28. 1. Wer in seiner Persönlichkeit widerrechtlich verletzt wird, kann zu sei-nem Schutz gegen jeden, der an der Verletzung mitwirkt, das Gericht anrufen.

스위스 민법 제28조(침해에 대한 원칙) ① 위법하게 인격이 침해된 자는 그 침해를 야기한 자를 상대로 인격의 보호를 위해 법원에 소구할 수 있다.

33)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 20. (1) Wer in einem Persönlichkeitsrecht verletzt worden ist oder eine solche Verletzung zu besorgen hat, kann auf Unterlassung und auf Beseitigung des widerrechtlichen Zustandes klagen. Der Anspruch auf Unterlassung umfasst auch den Anspruch auf Beseitigung eines der Unterlassungsverpflichtung widerstreitenden Zustandes.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17a Abs. 3 können auch die dort genannten Personen klagen.

오스트리아 민법 제20조 ①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그런 침해의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침해의 중지와 위법한 상태의 제거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34) 고철웅, 「인격권 개념의 입법에 관한 소고-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하여」, 민사법학, 2022.

35) 김훈주, 「민법상 인격권 신설에 대한 검토」, 재산법연구, 제40권 제4호(2024. 2.)

중국은 2020년 통일민법전을 제정하면서 민법 제4편을 ‘인격권’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총 6개의 장으로 제989조부터 제1039조까지 인격권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그 밖에 베트남 · 라오스 · 캄보디아 · 대만 등에서 인격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

36) 안문희 등 2인, 법무부 연구보고서 「민법상 인격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2021
프랑스 민법 제9조 누구나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며(제1항)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법원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중단을 위한 기탁, 압류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급한 경우에 해당 조치는 긴급명령의 형태로도 가능하다(제2항)

37) 서종희, “민법일부개정안에 신설된 인격권 조항에 대한 검토”, KISO 저널 제47호 법제동향
독일 연방대법원은 기본법 제1조9 및 제2조10로부터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서의 일반적 인격권을 인정한다. 한편 독일은 인격권 침해시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손해배상 및 침해로 얻은 이익의 반환뿐만 아니라 금지청구권을 인정한다. 인격권 침해의 경우

일본은 불법행위 개별규정을 통해 생명·신체·자유 또는 명예의 침해를 불법행위로 보고 인격권의 보호에 있어서 위법성을 불법행위의 객관적 성립요건으로 요구하며, 인격권 개념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³⁸⁾

다음으로, 인격표지영리권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논의되기 시작한 미국의 경우 연방이 아니라 각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규율함. 각 주는 보통법(common law) 또는 성문의 규정(statutes)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을 규율하는데, 이와 같이 성문규정이나 보통법을 통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주는 2022년 당시 36개로 나타났다.³⁹⁾

그 밖에 독일의 경우 연방최고법원에서 단일의 인격권이 정신적 이익 뿐만 아니라 재산적 이익까지도 일원적으로 보호한다고 판시⁴⁰⁾하였고,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에서 성명, 초상 기타 고객흡인력 있는 개인식별 정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에 관한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등⁴¹⁾ 판례를 통해 인격표지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음.

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비재산적인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독일 민법 제12조 제2문, 제862조 제1항 제2문, 제1004조에 근거하여 침해자에 대한 금지청구권(Unterlassungsanspruch)을 행사할 수 있다

38) 안문희 등 2인, 법무부 연구보고서 「민법상 인격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2021

39) 법무부 보도자료,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 12. 26

40) 안병하, 「독일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논의 개관, 비교사법」, 2016, vol.23, no.1, 통권 72호

41) 임상인,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일본의 동향: 最高裁2012. 2. 2. 핑크레이디 사건과 最高裁 2004. 2. 13. 경주마 사건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2012, vol.7, no.4,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인격권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1) 개정안의 주요내용

안 제3조의2는 인격권을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정의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u> <u>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u>

2) 개정안 검토

가) 인격권 조문의 위치

개정안은 “인격권”을 신설하면서 제3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민법의 체계상 제1편 총칙 제2장 인(人)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뒤에 위치하게 됨.

민법의 체계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제2조 신의성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4조 성년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이하 생략)
	제3장 법인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이하 생략)
제2편 물건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저당권	(이하 생략)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2장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이하 생략)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제763조 준용규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이하 생략)	

인격권은 채권과 물권으로 구분되는 재산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고, 가족권 또는 상속권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2편부터 제5편까지의 내용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민법」상 인격권 규정의 신설을 처음으로 검토한 2014년 민법 개정위원회는 인격권 규정의 위치와 관련하여 총칙편, 채권 각칙(불법 행위), 제6편 ‘인격권’ 신설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고, 인격권에 대하여 하나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조항을 두기로 하면서 조항의 위치를 총칙편에 두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음.⁴²⁾

개정안은 제1편 총칙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을 규정한 제3조의 다음 조문으로 인격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권리능력, 행위능력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제1편 총칙 제2장제1절 능력”에 인격권을 포함하는 것이 법 체계적 관점에서 적정한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⁴³⁾

42) 권영준,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 물권편), 법무부, 2017

채권각칙(불법행위) 부분에 인격권 관련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격권이 반드시 불법행위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 제6편 인격권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편(編)을 추가할 만큼 인격권에 대해 세부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음.

43) 권영준,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 물권편), 법무부, 2017

제3조는 사람의 권리에 대해 최초로 언급하고 있어, 제3조의2에 사람에게 인정되는 본질적 권리인 인격권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 인격권의 내용

개정안은 인격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인격권의 구성요소로 언급되는 사항인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등의 권리는 전통적으로 “인격권”에 포함되는 법익에 해당함. 그 외에도 판례는 명예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⁴⁴⁾, 초상권, 성명권⁴⁵⁾ 등을 인격권으로 인정하여 왔음.⁴⁶⁾

개인정보 역시 판례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격권을 구성하는 법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⁴⁷⁾⁴⁸⁾

44)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

45) 자신의 성명의 표시 여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46) 고철웅, 「인격권 개념의 입법에 관한 小考」, 민사법학 제99호(2022. 6.), p. 70.

47)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48)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음성·대화의 경우,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대화 녹음의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에서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로서 “음성권”을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라고 판시하였음.⁴⁹⁾⁵⁰⁾

또한,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라고 규정한 부분은 인격권의 종류와 내용은 현재 규정된 것보다 확장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예시되지 않은 이익들도 인격권의 보호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⁵¹⁾

개정안에서 규정된 인격권의 구성요소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⁵²⁾에서 규정한 인격권의 내용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그 내용은 대부분 유사하지만, “저작물 및 사적 문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다만,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는 문구를 통해 열거되지 않은 인격적 이익도 동 규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9)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50) 2014년 정부 민법 개정시안에서는 “음성·대화”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포함될 수 있음을 근거로 예시에서 제외하였음.

51)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안대희, 양창수의 반대의견 이는 인격권이 사자에게도 살아 있는 사람과 같은 또는 그에 준하는 내용과 범위로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인격권이라는 법개념 자체가 인격적 성질을 가지는 개별적 이익에 대하여 개별적인 국면에서 법적 보호가 부여되는 것이 쌓여감으로써 점차로 형성되어 간 것임을 지적함에 그치고자 한다.

52)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인격권 구성요소 비교]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민법 개정안	
	김현정의원안	박희승의원안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姓名), 초상(肖像) 음성(音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	-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	-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이익

한편, 인격권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 개정안이 타인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는 모든 표현행위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음.⁵³⁾

예컨대, 초상, 성명, 개인정보 등 사회활동 속에서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정보가 존재함에도 그 동의 없는 사용만으로 인격권 침해로 인정할 것인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임.

53) (사)오픈넷, “인격권 정의한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 및 개인 정보보호법의 형해화를 우려한다”, 2022. 4. 12.

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안 제751조의2 신설)

1) 개정안의 주요내용

안 제751조의2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과 침해중지·회복조치청구권을 규정하고,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침해예방청구권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u>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 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 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 상할 책임이 있다.</u> ② (생략) <u><신설></u>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u>타인에게 정신상 고통</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751조의2(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 의 배상) ① <u>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u> ② <u>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자 에 대하여 피해자는 침해의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u> ③ <u>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할 염려 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피해자 는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 보를 청구할 수 있다.</u>

2) 개정안 검토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과 같은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려움. 안 제751조의2는 이를 고려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 외에 인격권 침해행위의 예방 및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안 제751조의2제1항 손해배상(금전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면서, 종전에 제751조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청구 대상 범위를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제751조의2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제750조, 제751조제1항에 따라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바, 안 제751조의2제1항의 신설 및 제751조제1항 중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의 삭제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⁵⁴⁾

다음으로, 안 제751조의2제2항에 따른 인격권 침해에 따른 중지 또는 침해된 인격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전적·예방적 청구(“금지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54) 민법 제751조제1항의 의미에 대하여 제750조와의 관계에서 주위적 규정설(다수설, 판례)과 독자설 규정설로 학설의 대립이 있고, 정신적 손해배상의 근거규정, 책임 구성 등에 대한 해석 논의가 있는바, 안 제751조제1항의 개정에는 손해배상의 체계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

“침해된 인격권 가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경우 「민법」 제764조에서 손해배상의 특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⁵⁵⁾”과의 관계에서 그 요건과 내용이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인격권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청구(“금지청구권”)와 관련하여는, 사후적 손해배상 조치 이외에 예방적 목적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⁵⁶⁾ 등에 근거하여 인격권 침해를 포함한 일반적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는 점과⁵⁷⁾

법익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⁵⁸⁾ 중 언론 등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서는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⁹⁾

55)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56)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느냐,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7) 김상중,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규정의 신설 제안」, 민사법학, 2011, 제55호(2011.9)

58) 「저작권법」 제123조, 「특허법」 제126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조, 「소비자기본법」 제70조 등임.

5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안 제3조의3 신설)

1) 개정안의 주요내용

안 제3조의3은 “인격표지영리권”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라고 규정(제1항)하면서,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제2항)하고,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며(제3항·제4항), 권리의 존속기간(제5항)과 그 권리구제수단(제6항)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3(인격표지영리권) ①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이하 “인격표지영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제1항의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 인격표지영리권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권리는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한다. ⑥ 제751조의2의 규정은 인격표지영리권에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2) 개정안 검토

안 제3조의3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의 개념과 권리구제수단의 명시적 근거를 「민법」에 규정함으로써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고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⁶⁰⁾ 첫째, 인격표지영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안 제2항) 하면서도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안 제5항)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격표지영리권의 법적 성격을 본인의 인격에서 파생하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안 제3조의2에 따른 인격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권리로 보았다는 점임.

이에 대하여는 인격표지영리권을 재산권으로 보아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⁶¹⁾과 인격표지영리권을 인격권의 성격을 가진 권리로 보면서도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도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⁶²⁾도 있음.

60) 규정 대상과 관련하여, “널리 인식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기본법인 「민법」에 규정하는바

61) 한지영, 「민법상 ‘인격표지영리권’ 입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아주법학, 2023, vol.16, no.4
인격표지영리권이 보호하는 법익은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서 인격권이 보호하는 ‘인격적 이익’과 구별되어야 한다. 인격권 이익에는 ‘개인의 명예’, ‘인간으로서의 존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프라이버시’ 등이 해당된다. 반면에 인격표지영리권은 비록 개인의 성명, 초상 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격적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본질은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엄연한 재산권이고, 인격표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상업적, 영리적 이익’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62)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민사법학 제57호(2011. 12.)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성명·초상 등 인격표지가 포함된 상표권·디자인권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상표법」⁶³⁾, 「디자인보호법」⁶⁴⁾ 등 인격표지를 이용한 상표권·디자인권 등의 양도 및 이용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개별법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둘째, 안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권리자의 이용허락 철회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사유”,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익” 등의 의미가 포괄적·추상적으로, 그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정당한 이익”의 경우와 관련하여, 인격표지영리권 관련 정부안을 입법예고하였던 법무부는 “정당한 이익”을 언론취재 등 정당한 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⁶⁵⁾로 설명하였음.

그러나 민법 제481조에서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를

63) 「상표법」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①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64) 「디자인보호법」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디자인권은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65) 스포츠 경기 생중계 등 일반 관중이 얼굴이 화면에 나온 경우, 언론에 시민 인터뷰가 사용된 경우 등

“변제함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라고 보거나, “정당한 이익”이 적합한 법문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은 인격표지영리권의 존속기간을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30년은 한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인격표지에 대한 영리적 권리가 소멸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판단⁶⁶⁾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종전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기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인격표지영리권의 존속기간을 사후 50년⁶⁷⁾으로 본 바 있고, 2011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의 보호기간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한다는 점과⁶⁸⁾

권리주체의 이익과 공중의 이익과의 조화라는 면에서 그 존속기간은 너무 길지 않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음⁶⁹⁾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6) 법무부 보도자료,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 12. 26

67) 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68)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권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69) 이해완,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 방향에 대한 연구」, 성균관법학, 2016 vol.28, no.4, 이와 관련하여, ‘검토법안’은 인격표지권자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 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크게 봐서 비교적 짧은 기간의 존속기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큰 틀에서 찬성할 수 있는 입장이라 하겠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 속에서 대중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산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권리주체의 이익과 공중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는 그보다 더 짧은 10년 정도의 보호기간만 인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앞서 검토하였듯 제22대국회에도 퍼블리시티권의 정의와 보호범위 및 권리구제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이⁷⁰⁾ 2026년 1월 5일 발의되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중임을 심사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라. 부칙

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개정안에서 신설한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격표지영리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054

70) 의안번호 제2215847호,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2026. 1. 5. 발의 및 2026. 2. 23. 상정
퍼블리시티권을 "자신의 초상등[초상, 성명(예명·아호·약칭 등 이명을 포함한다), 음성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사람을 특정한다고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정의하고,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퍼블리시티권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한다고 하면서 권리의 침해제거·예방 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등을 규정함.

참고자료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관련 「민법」 개정안 현황

구분	대표발의/제출	개정내용
제17대	정부 2004. 10. 21. [170611]	제1조의2(인간의 존엄과 자율) ①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좇아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②사람의 인격권은 보호된다.
제18대	최원석의원 2013. 8. 23. [1906496]	제766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6조의3(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해자는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766조의4(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제766조의3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는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정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청구권을 행사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④ 제1항의 권리자가 사망한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제766조의5(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 ①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적 징표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권리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권리를 승계한다.

구분	대표발의/제출	개정내용
		③ 제1항의 권리는 권리자가 사망한 후 30년까지 존속한다. ④ 제1항의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766조의3을 준용한다.
제19대	정부 2014. 2. (미제출)	제3조의2(인격권)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1대	정부 2023. 11. 13. (입법예고 2022. 4. 5.) [2125350]	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姓名), 초상(肖像), 음성(音聲),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사람은 제1항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를 제거하고 침해된 인격적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람은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윤미향의원 2022. 8. 31. [2117124]	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 등에 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사람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의2(법인의 인격권) 제3조의2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에 준용한다.
	정부 2022. 12. (미제출)	제3조의3(인격표지영리권) ①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권리는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한다. ⑥ 제3조의2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인격표지영리권에 준용한다.
제22대	김현정의원 2024. 9. 24. [2204218]	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姓名), 초상(肖像), 음성(音聲),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사람은 제1항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이하 “인격권”

구분	대표발의/제출	개정내용
		이라 한다)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를 제거하고 침해된 인격적 이익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람은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박희승의원 2025. 11. 4. [2213878]	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3(성명·초상 등의 영리적 이용) ①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이하 “인격표지영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권리는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한다. ⑥ 제751조의2의 규정은 인격표지영리권에 준용한다. 제751조의2(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침해의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피해자는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